

# 법령·지침 등

##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개정

2003. 9. 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224호

제2호중“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(별표2)”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(별표1)”로 하고, 제3호라목 및 제4호가목중“한국주택은행”을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
3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적용대상

- (1)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제2호단서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중 소득요건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- (2)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한 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

#### 나. 부과방법 및 금액

- (1) 부과방법

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+차등부과금액

#### (2) 차등부과금액

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각 40%에 해당하는 금액

- ※ 당해지구 입주개시 후 차등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용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

#### 다. 부과시기

- (1) 가목(1)에 해당하는 자

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

- (2) 가목(2)에 해당하는 자

#### (가) 최초 계약시

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

#### (나) 1차 재계약시

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

#### 라. 기타

2000년 6월 2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.